

2017학년도 학교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 번호	9
----------	---

제출연월일 : 2018년 1월 31일
제 출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행정실장 박정호

1. 제안이유

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2017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7학년도 제5회 추경예산액

(단위:천원)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율(%)	
432,378	433,966	-1,588	- 0.4	

가. 세입 예산 총괄

(단위:천원)

장	관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a-b)	주요증감사항
		변경 (a)	구성비(%)	기정 (b)	구성비(%)		
이전	지방자치	0	0	0	0	0	
수입	단체이전						
이전	교육비	366,977	84.9	366,030	84.3	947	○ 목적사업비 : 947천원 - 초등돌봄교실지원 외 7건
수입	특별회계						
이전	기타이전	0	0	0	0	0	
수입	수입						
자체	학부모	54,573	12.6	57,050	13.2	-2,477	○ 지원금 처리 : - 3,206천원 - 돌봄교실 운영 -3,206천원 ○ 수익자부담 : 729천원 - 교직원급식비 729천원
수입	부담수입						
자체	행정활동	1,230	0.3	1,288	0.3	-58	○ 예금이자 : - 30천원 ○ 기타행정활동수입 : - 28천원
수입	수입						
기타	전년도	9,598	2.2	9,598	2.2	0	
수입	이월금						
합계		432,378	100	433,966	100	-1,588	

나. 세출 예산 총괄

(단위:천원)

정책사업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a-b)	주요증감사항
	변경 (a)	구성비 (%)	기정 (b)	구성비 (%)		
인적자원운용	54,646	12.6	54,252	12.5	394	○기간제직원 인건비 : 394천원
학생복지/교육 격차해소	81,634	18.9	85,127	19.6	-3,493	○목적사업비 : - 3,522천원 ○교직원급식비 : 729천원 ○불용사업 최소화 : - 700천원
기본적교육활동	62,067	14.3	58,483	13.5	3,584	○목적사업비 : 4,000천원 ○불용사업 최소화 : - 416천원
선택적교육활동	55,587	12.9	56,371	13.0	-784	○돌봄교실운영 : - 691천원 ○책꾸러미지원사업 : 76천원 ○불용사업 최소화 : - 169천원
교육활동지원	73,311	17.0	74,041	17.1	-730	○불용사업 최소화 : - 730천원
학교일반운영	105,133	24.3	105,692	24.3	-559	○불용사업 최소화 : - 559천원
학교재무활동	0	0	0	0	0	
합 계	432,378	100	433,966	100	-1,588	

붙임 2017학년도 가천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1부.

2018학년도 가천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안전 번호	10
----------	----

제출연월일 : 2018년 1월 29일
 제출자 : 학 교 장
 소 관 : 행정실장 박정호

1. 제안이유

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거 2018학년도 가천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8학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액 : 212,321천원

가. 세입 예산 총괄

(단위:천원)

장	관	2018년도 예산액		전년 예산액		증감 (a-b)	주요증감사항
		본예산 (a)	구성비 (%)	전년 (b)	구성비 (%)		
이전수입	지방자치 단체이전 수입						
이전수입	교육비 특 별회계이 전수입	193,565	91.2	195,210	89.0	-1,645	■경상운영비 감소 △1,645천원 -의무교과서지원비가 목적사업비로 전환
이전수입	기타이전 수입					0	
자체수입	학부모부 담수입	10,656	5.0	9,216	4.2	1,440	■급식비단가 증액 1,440천원
자체수입	행정활동 수입	1,100	0.5	900	0.4	200	■불용물품매각 증액 200천원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금	7,000	3.3	14,000	6.4	-7,000	■순세계잉여금 감소 △7,000천원
합계		212,321	100	219,326	100	-7,005	

나. 세출 예산 총괄

(단위:천원)

정책사업	2017년도 예산액		전년 예산액		증감 (a-b)	주요증감사항
	본예산 (a)	구성비 (%)	전년 (b)	구성비 (%)		
인적자원운용	7,760	3.7	11,444	5.2	-3,684	■ 교직원 연수비 감액
학생복지/교육 격차해소	21,699	10.2	20,227	9.2	1,472	■ 급식비 전출금 증액
기본적교육활동	35,184	16.6	55,135	25.1	-19,951	■ 교과서 지원금 감액 ■ 교과활동비, 현장학습비 감액
선택적교육활동	9,200	4.3	4,800	2.2	4,400	■ 방과후학교운영 증액
교육활동지원	40,466	19.1	31,236	14.3	9,230	■ 교무학사운영 증액 ■ 정보화실 운영비 증액 ■ 교육여건개선비 증액
학교일반운영	94,780	44.6	92,120	42.0	2,660	■ 학교시설장비유지비 증액
학교재무활동	3,232	1.5	4,364	2.0	-1,132	■ 예비비 감액
합계	212,321	100	219,326	100	-7,005	

붙임 2018학년도 가천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서(안) 1부.

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안전 번호	11
----------	----

제출연월일 : 2018년 1월 31일

제 출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행정실장 박정호

1. 개정이유

- 일부 정당인 및 선출직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의 직함을 얻고자 지역위원회에 출마하는 사례가 많고, 이들 직함을 정치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2016. 6. 17.)에 따른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6. 6. 17. 개정)

3. 주요내용

- 지역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 규정 신설(제3조)
 - 다양한 주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 위원의 퇴직 규정 미비점 개선·보완 (제6조)
 - 당연퇴직 사유 및 사임규정 정비
- 지역위원 정수 중 정당인 수 제한 규정 신설(제12조)
 - 정당인은 지역위원 정수의 과반을 넘을 수 없도록 조항 신설
-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 규정 개정(제20조제2항)
 - 위원의 임기개시 후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 개시일 규정
-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규정 신설(제28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의 운영위원회 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문,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 부칙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삽입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2. 가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③ <현행 ②항과 같음>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생략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⑥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학교운영위원이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되며 단, 학생 졸업의 경우 운영위원 자격은 2월말까지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② ~ ③ <삭제>
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단,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한다. 1.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단,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한다. 1.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2.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3.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4.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④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중요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퇴직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중요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리가 완료된 때 당연퇴직된다.	④
④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④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현행	개정
<p>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p> <p>②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p> <p>③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7명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정수) ① -----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p> <p>② 제1항의 위원정수는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각각 1명 포함된 정수이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병설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p> <p>③ <삭제></p>
<p>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 ② 생략</p> <p>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2명으로 하되, <u>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u>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p> <p>④ 생략</p>	<p>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학교장이</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 ④ 생략</p> <p>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p> <p>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p> <p>⑦ 생략</p>	<p>제10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투표) ----- ---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⑥ (당선자 결정)----- -----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 ③ 생략</p> <p>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⑤ ~ ⑥ 생략</p>	<p>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입후보자 등록) ----- <u>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추천인원이 위원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하고 위원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학부모·교원위원 2/3이상 투표에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p>	<p>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 -----, <이하 삭제></p> <p>② <u>당원</u> (“당원”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p>

현행	개정
<p>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⑤ 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p> <p>⑥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p>	<p>제19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 삭제</p> <p>②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⑤ <u>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u></p> <p>⑥ <u>학교발전기금의</u> -----</p>
<p>제20조(회기) ① 생략</p> <p>② <u>임시회의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③ <u>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u></p> <p>④ <u>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u></p> <p>⑤ ~ ⑦ 생략</p>	<p>제20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u></p> <p>③ <현행 ②항과 같음></p> <p>④ <u>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u>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20조1(위원의 제척 등) ① ~ ③ 생략</p>	<p>제20조2(위원의 제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u>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이 2명 이상의 서명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록 말미에 서명하게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 ----- ----- ----- -----</p> <p><u>서명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 <u>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제1항제11호</u>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략</p>
<p><신설></p>	<p>제28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p>	<p>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u>3분의 1 이상</u>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p>
<p>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u>5일 이상</u>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u>7일</u>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u>2/3이상</u>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p>	<p>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u>3분의 2 이상</u>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p>
<p>제3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른다.</p>	<p>제33조 <삭제></p>

부 칙(개정10차 2018.2.00.)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